

## 전산자원 이용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1999. 12. 20

개정 2001. 6. 1

제 1 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전산자원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환경을 조성하고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본 대학의 교수, 직원, 연구원, 학생과 포항공대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2. '전산자원'이라 함은 대학내에서 전산망 연결 여부 및 연구용, 업무용, 교육용 또는 개인용, 공용에 관계없이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와 관련(내장) 정보자원을 말한다.
3. (삭제)
4. '전산보안' 이라 함은 사용자가 전산자원에 허가되지 않는 방법이나 권한으로 접근하여 전산자원을 침해 또는 오남용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학술정보원의 각 시스템관리자와 연구실 또는 학과 등 대학의 세부조직 단위에서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운영담당자를 말한다.

제 3 조(전산자원의 이용범위) ① 대학의 전산자원은 교육, 연구, 업무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4조의 이용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사용자는 제6조에서 언급한 사용제한이나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는다.

제 4 조(전산자원의 이용기준) 전산자원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학의 전산자원을 오남용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대학의 전산자원에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2. 소프트웨어 이외 컴퓨터나 전산망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문서, 이미지, 동화상, 로고, 프로그램, 기타 파일 등)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소프트웨어 취득후 제한된 사용수를 초과하여 복사나 배포를 하는 행위
4. 타 이용자가 소유하거나 설치장소가 지정된 전산자원을 허락 없이 개조, 파손, 이동하

는 행위

5. 대학의 사전 허가 없이 서버를 설치하여 내외부에 서비스 하는 행위
6. 대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IP 나 Domain Name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7. 허가되지 않은 전산자원에 고의적으로 접근하거나 타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8. 사용권한이 없는 전산자원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전산시스템 파일, 자료 등을 열람, 복사, 유출, 훼손하는 경우
9. 전산자원의 구성에 손상을 주는 프로그램(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고의적으로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 대학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연결된 다른 사이트의 컴퓨터를 오남용하는 행위
11. 암호화된 자신의 계정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12. 대학의 전산자원을 적절한 승인절차 없이 상업적, 정치적,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3. 전자우편을 오남용(SPAM 메일의 발송)하거나 SPAM의 거점으로 이용하는 행위
14. 전자우편 메일링 리스트의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
15. 학술정보원 운영규정 제40조에서 정한 시스템운영세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16. 기타 전산자원의 오남용이라고 학술정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 5 조(시스템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전산자원의 관리감독은 대학의 각 부서 관리자에게 위임되며 이 운영세칙 내에서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1. 시스템이나 구성품에 대한 절도나 파손 및 침입에 대비한 예방조치
2.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한 유지
3.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관리
4. 해킹이나 정보유출에 대비한 보완조치
5. 시스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 공지
6. 전산자원 오남용 발생시 관련 해당부서나 다른 시스템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할 책임

③ 전산자원 이용 규정의 위배사항이 발생되면 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음의 권한이 부여된다.

1.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이용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2. 컴퓨터나 네트워크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개인자료(파일, 디스켓, 테이프, 기타 기록매체)를 조사하거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다.

제 6 조(제재 절차) ① 전산자원의 오남용이나 불건전한 정보유통이 발생된 경우 각 시스템 관리자는 관련 학술정보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사용제한 등의 선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4조 및 5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제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전산자원 이용이나 서비스의 제한

④ 시스템의 이용제한 이상의 징계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술정보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은 학생처장, 직원은 행정처장, 교수는 교무처장에게 징계를 의뢰하며, 전문대학원생은 각 전문대학원장에게, 연구원은 인사권을 가진 처나 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제 7 조(청원절차) ① 제재를 받은 자는 이의 제기 및 사용권한 복구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제6조 4항에서 언급한 각 부서나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청원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② 청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규정에 의거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원자와 학술정보원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 8 조(삭제)

## 부 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자원 오남용 사례가 발생된 경우 학술정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2. 전산자원 이용 규정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3. 이 규정은 '99. 12. 20 부로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으로 이전 규정인 전산자원 이용 규정은 이 세칙과 정보윤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구분되어 나누어짐으로 이 세칙의 시행일부로 폐지한다.